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30
----------	-------

발의연월일 : 2025. 12. 9.

발 의 자 : 임종득 · 성일종 · 김상훈
강명구 · 김성원 · 이달희
박성훈 · 서천호 · 김석기
정점식 · 이준석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맹견 이외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 유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되어 방치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 이외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상향하고, 행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 유기 행위 등을 포함한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7조 및 제101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7조(벌칙) ① · ② (생 략)	제97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 ----- ----- -----.
<u><신 설></u>	<u>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u> <u>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u> <u>(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u> <u>한다)</u>
<u>1. (생 략)</u>	<u>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u>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5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 <u>1천만원</u>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 ----- <u>500만원</u> ----- -----.
<u>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u> <u>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u> <u>(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u> <u>한다)</u>	<u><삭 제></u>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5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3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8.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1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6.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5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⑤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 ----- ---<u>1천만원</u>----- -----. 1. ~ 9. (현행과 같음) ② ----- -----<u>500만원</u>----- -----. 1. ~ 18. (현행과 같음) ③ ----- -----<u>200만원</u>----- -----. 1. ~ 26. (현행과 같음) ④ ----- -----<u>100만원</u>----- -----. 1. ~ 7.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